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2492

발의연월일: 2021. 9. 9.

발 의 자: 박덕흠 · 엄태영 · 류성걸

장제원 · 신원식 · 김성원

이명수・윤두현・이종배

이만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대형 스피커 등의 음향장비를 동원하여 동일한 음악 또는 음성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송출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장소 주변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주민들 또는 근로자들이 소음 공해로 고통 받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집회 및 시위장소에서 금지되는 소음의 기준을 강화하며, 동일한 음악 또는 음성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것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동일한 음악 또는 음성을 반복적으로 재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할경찰 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거부·방해할 경우 처벌하여, 집회 또 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주변지역의 사람들을 소음 공해로부터 보호하 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을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동일한 음악이나 음성을 반복적으로 재생하여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발생시켜"를 "발생시키거나 동일한음악 또는 음성을 반복적으로 재생하여"로, "소음 유지"를 "소음 유지, 동일한음악·음성의 반복적인 재생 금지"로 한다.

이 경우 장소별·시간대별로 준수하여야 하는 확성기등의 소음도 기준과 반복적인 재생이 금지되는 음악 또는 음성의 종류·횟수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 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 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 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동일한 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 음악이나 음성을 반복적으로 재 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후단 생하여서는-----. 이 경우 신설> 장소별·시간대별로 준수하여야 하는 확성기등의 소음도 기준과 반복적인 재생이 금지되는 음악 또는 음성의 종류·횟수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 (2) -----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 생시키거나 동일한 음악 또는 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음성을 반복적으로 재생하여---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 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등 -----소음 유지, 동 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일한 음악·음성의 반복적인 재 할 수 있다. 생 금지-----